



# 1. 추진 목적

## 목적

- 석면해체·제거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능력 및 보유 인력 등의 질적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수준향상
-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작업기준 준수 여부
  - 장비의 성능
  -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및 전산화 정도 등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1. 추진 목적

## 0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 ①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기준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및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1. 추진 경과

- 09. 8.           **안전성평가 제도 마련 (법 38조의4 제4항)**
- 10. 5~12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안) 작성
- 11. 3~8         1차 시범평가(50개소) 실시
- 11. 9~12       시범평가 결과에 의한 평가기준(안) 보완
- 12. 1. 26.      **안전성평가 세부기준 마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 12. 3~8         2차 시범평가 실시(50개소)
- 13. 3~9         ' 13년 안전성평가 실시(121개소)
- 14. 3~10       ' 14년 안전성평가 실시(123개소)
- 15. 1~2         ' 15년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목표 1,000개소)



## 2. ' 14년 평가결과

### 주진실적

사업명	목 표	실 적	달성률(%)	비 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개소)	2,000	1,780	89.0%	
- 안전성 평가	150	123	82.0%	평가대상 196개소 중 123개소에 대해 정상평가 실시, 나머지 73개소는 평가 불가
- 컨설팅(교육) 지원	1,850	1,657	89.5%	12월말 월간실적 기준

- 평가대상 196개소 중 정상평가(사무실+현장)를 실시한 업체는 123개소(62.8%)이며, 평가 미실시 업체는 73개소(37.2%)임
- \* 평가 실시율은 '13년(64.4%,121개소/188개소)과 비교하여 다소 낮아짐(△1.6%p)

평가 실적			평가 미실시 사유					
계	평가 실시	평가 미실시	소계	현장 미등보	신고실적 없음	휴·폐업	자진 취소 등	평가 거부
196	123	73	73	38	15	5	11	4
100(%)	62.8	37.2	100(%)	52.1	20.5	6.8	15.1	5.5

## 2. ' 14년 평가결과

### 평가결과

- 정상평가를 실시한 123개소의 평균점수는 75.1점으로, B등급이 44개소(35.8%)로 가장 많으며, D등급이 10개소(8.1%)로 가장 적음

구분	평균점수 (환산점수)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 미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급별 업체 수	75.1	14	30	44	25	10
분포(%)	100	11.4	24.4	35.8	20.3	8.1

- 자율평가 대상의 평가점수(76.9점)가 의무평가(74.8점) 대상보다 2.1점 높음

구분	평가 업체	평균 점수	평가항목별 평균점수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42.4점)	장비의 성능 (30.9점)	보유인력의 능력개발 정도 (20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 (10점)
계	123	75.1	31.6	22.1	13.2	8.4
의무	106	74.8	31.5	21.9	13.1	8.4
자율	17	76.9	31.7	23.0	13.6	8.7

## 2. '14년 평가결과

- > 지역본부별 점수는 대전본부가 77.7점으로 가장 높고, 광주본부가 70.3점으로 가장 낮음
  - 권역별 등급은 중부본부 및 대전본부의 S등급 업체가 각 4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본부 및 부산본부가 각 1개소로 가장 적음

구분	평가 업체	평균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123	75.1	14	30	44	25	10
서울본부	8	76.3	1	0	6	1	-
중부본부	30	75.9	4	11	7	4	4
부산본부	26	77.0	1	8	13	4	-
대구본부	14	73.7	2	2	3	7	-
광주본부	24	70.3	2	5	6	6	5
대전본부	21	77.7	4	4	9	3	1

## 3. 추진성과

- ◎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수준 향상
  - > '14년 석면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1.9점 상승 ('13년 78.0점 → '14년 79.9점)
    - 이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업체의 자율적 노력 및 공단의 컨설팅 사업에 의한 성과로 판단됨
- ◎ 평가자 간의 편차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 감소
  - > 권역별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점수의 표준편차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3.31점 감소 ('13년 6.28점 → '14년 2.99점)
    - 이는 평가자 교육 및 표준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평가로 평가자 간의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평가대상 업체의 이의 신청 감소 ('13년 4개 기관 13건 → '14년 1개 기관 2건)

### 3. 미흡한 점

- **등록업체 전수평가 미실시로 인한 평가제도 정착 지연**
  - > 현장평가의 문제점 등으로 등록업체 전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 저하
  
- **안전성평가 회피 등으로 인한 인력손실 발생**
  - > 미실시 업체(73개소) 중 38개소(52.0%)는 해체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사무실평가 후 안전성평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실적이 없거나 등록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 등록 이후 해체·제거 작업 실적이 없거나 등록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관할지역별 석면해체·제거작업 연장수(2014년)

구분	총계	800㎡ 미만	800㎡이상 2,000㎡미만	2,000㎡ 이상 또는 분무제, 내화피복제,
계	15,701	13,588(86.5%)	1,359(8.7%)	754(4.8%)
서울지역본부	756	655	66	35
서울북부지사	820	685	76	59
강원지사	417	371	33	13
강원동부지사	359	312	36	11
부산지역본부	1,158	1,016	97	45
울산지사	492	435	38	19
경남지사	1,044	908	84	52
경남동부지사	380	321	44	15
광주지역본부	754	658	63	33
전북지사	457	389	45	23
전북서부지사	337	291	31	15
전남동부지사	413	359	31	23
전남서부지사	416	376	24	16
제주지사	455	427	21	7
충부지역본부	594	464	70	60
경기남부지사	894	767	76	51
경기북부지사	920	776	85	59
경기서부지사	428	350	47	31
경기동부지사	393	354	23	16
부천지사	206	178	17	11
대구지역본부	655	560	65	30
대구서부지사	487	399	68	20
경북동부지사	351	321	21	9
경북북부지사	576	510	43	23
대전지역본부	891	771	78	42
충남지사	336	301	24	11
충북지사	712	634	53	25

### 일선기관 월별 석면예체. 제거작업 연장수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계</b>	<b>15,701</b>	<b>994</b>	<b>1,057</b>	<b>1,221</b>	<b>1,528</b>	<b>1,385</b>	<b>1,384</b>	<b>1,852</b>	<b>1,180</b>	<b>1,153</b>	<b>1,383</b>	<b>1,274</b>	<b>1,290</b>
서울지역본부	756	53	59	53	68	54	61	100	61	43	54	71	79
서울북부지사	820	50	70	47	76	44	64	95	67	71	79	71	86
강원지사	417	18	21	34	34	34	55	51	40	32	42	34	22
강원동부지사	359	19	16	25	43	30	44	41	28	37	32	22	22
부산지역본부	1,158	84	59	86	93	91	93	157	95	85	101	101	113
울산지사	492	36	42	38	43	45	38	59	35	37	39	44	36
경남지사	1,044	73	75	93	110	91	89	116	64	95	83	76	79
경남동부지사	380	26	24	23	42	34	35	40	25	29	46	26	30
광주지역본부	754	43	65	56	55	57	69	114	60	57	62	63	53
전북지사	457	27	29	35	37	40	49	63	38	42	34	38	25
전북서부지사	337	21	19	28	41	31	29	38	26	17	39	23	25
전남동부지사	413	25	24	28	50	35	35	40	37	32	36	34	37
전남서부지사	416	31	38	30	35	32	39	25	32	21	44	50	39
제주지사	455	26	19	32	57	35	49	52	23	30	43	40	49
중부지역본부	594	34	35	46	41	63	55	80	35	41	60	50	54
경기남부지사	894	45	69	73	75	108	63	110	86	67	72	62	64
경기북부지사	920	27	59	77	99	84	81	122	70	84	73	82	62
경기서부지사	428	37	26	35	37	28	38	54	27	30	39	41	36
경기동부지사	393	22	17	27	33	34	28	63	26	35	31	37	40
부천시도원	206	21	21	17	15	9	17	32	19	11	11	13	20
대구지역본부	655	47	54	55	65	62	52	69	46	46	54	46	59
대구서부지사	487	42	36	33	47	36	48	55	35	37	37	40	41
경북동부지사	351	21	20	37	41	34	33	26	29	25	34	26	25
경북북부지사	576	35	43	48	75	57	46	67	39	35	57	33	41
대전지역본부	891	73	61	73	83	79	71	88	65	49	93	77	79
충북지사	336	18	20	21	40	47	36	34	19	19	27	29	26
충남지사	712	40	36	71	93	91	67	61	53	46	61	45	48

### 일선기관 석면 암유 사례별 석면 예체. 제거작업 연장수

구분	분무제(분집제)	내화벽벽제	전장제	지붕제	벽제	바닥제	파이프보온제	단열제	폼스킷	기타
<b>계</b>	<b>24</b>	<b>17</b>	<b>9,205(45.2%)</b>	<b>7,338(40.0%)</b>	<b>3,009(14.8%)</b>	<b>59</b>	<b>55</b>	<b>38</b>	<b>258</b>	<b>384</b>
서울지역본부	1	-	544	144	274	6	-	3	31	33
서울북부지사	11	3	654	174	322	11	4	3	57	36
강원지사	-	-	251	225	71	-	-	-	9	15
강원동부지사	-	1	190	190	44	1	-	-	3	18
부산지역본부	2	1	766	503	309	4	2	5	25	16
울산지사	-	-	282	214	122	-	11	2	9	3
경남지사	2	-	608	512	160	6	1	-	11	1
경남동부지사	-	1	183	229	58	1	1	-	-	4
광주지역본부	-	-	460	363	124	-	1	-	14	35
전북지사	-	-	279	221	78	2	-	-	-	9
전북서부지사	-	-	178	192	46	-	-	-	5	7
전남동부지사	4	2	226	184	56	-	25	17	4	17
전남서부지사	-	-	136	259	36	-	-	-	4	8
제주지사	-	2	210	252	49	1	-	1	5	19
중부지역본부	1	-	408	235	192	3	1	1	10	28
경기남부지사	-	1	526	420	164	8	3	1	14	16
경기북부지사	-	1	403	587	135	2	1	-	13	27
경기서부지사	-	2	321	117	101	1	1	-	10	14
경기동부지사	2	-	179	159	45	2	1	-	7	4
부천시	-	-	135	85	46	-	1	-	5	6
대구지역본부	-	1	329	385	94	2	-	-	4	7
대구서부지사	-	-	261	277	71	3	1	-	1	6
경북동부지사	-	-	190	181	42	-	-	1	1	8
경북북부지사	1	-	324	309	70	2	-	-	2	4
대전지역본부	-	-	593	368	143	3	-	-	6	30
충북지사	-	1	159	188	27	-	-	-	3	6
충남지사	-	1	410	365	130	1	1	4	5	7

**일선기관 관할지역 석면 함유 개체별 석면 예제 개거작업 연장수(암유면적 800m<sup>2</sup>미만)**

구분	천장재	지붕재	벽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캐스킷	기타
<b>계</b>	<b>7,756(46.9%)</b>	<b>6,137(37.1%)</b>	<b>2,122(12.8%)</b>	<b>39</b>	<b>38</b>	<b>28</b>	<b>142</b>	<b>277</b>
서울지역본부	453	113	207	6	-	2	18	26
서울북부지사	536	131	240	8	2	1	38	21
강원지사	211	202	57	-	-	-	5	10
강원동부지사	165	162	36	1	-	-	2	18
부산지역본부	663	430	239	4	1	2	15	12
울산지사	260	173	93	-	8	1	6	1
경남지사	519	448	110	2	1	-	5	1
경남동부지사	159	181	42	1	1	-	-	2
광주지역본부	394	305	90	-	-	-	8	25
전북지사	233	172	45	1	-	-	-	5
전북서부지사	149	159	26	-	-	-	3	7
전남동부지사	190	152	38	-	19	16	2	12
전남서부지사	115	233	23	-	-	-	1	7
제주지사	184	249	38	1	-	-	4	18
충부지역본부	309	172	110	2	1	1	4	17
<b>경기남부지사</b>	<b>440</b>	<b>337</b>	<b>100</b>	<b>3</b>	<b>2</b>	<b>-</b>	<b>9</b>	<b>12</b>
경기북부지사	308	489	82	1	-	-	-	16
경기서부지사	258	84	60	-	1	-	6	9
경기동부지사	149	142	31	1	-	-	4	4
부천시	113	74	32	-	-	-	2	4
대구지역본부	280	319	73	2	-	-	1	3
대구서부지사	204	212	45	2	1	-	1	5
경북동부지사	173	162	28	-	-	1	-	6
경북북부지사	286	263	51	2	-	-	1	4
대전지역본부	516	289	106	1	-	-	3	24
충북지사	135	168	19	-	-	-	1	3
충남지사	354	316	101	1	1	4	3	5

**일선기관별 1건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수(등록기준)**

구분	등록업체수(개소)	실적 1건이상 업체수(개소)	비율(%)
<b>계</b>	<b>2,111</b>	<b>1,582</b>	<b>74.9</b>
서울지역본부	182	83	45.6
서울북부지사	64	44	68.8
강원지사	95	78	82.1
강원동부지사	118	88	74.6
부산지역본부	101	78	77.2
울산지사	40	30	75.0
경남지사	118	97	82.2
경남동부지사	44	29	65.9
광주지역본부	98	74	75.5
전북지사	81	64	79.0
전북서부지사	56	46	82.1
전남동부지사	75	58	77.3
전남서부지사	56	50	89.3
제주지사	40	35	87.5
충부지역본부	76	47	61.8
<b>경기남부지사</b>	<b>93</b>	<b>77</b>	<b>82.8</b>
경기북부지사	102	81	79.4
경기서부지사	58	35	60.3
경기동부지사	42	24	57.1
부천시	24	18	75.0
대구지역본부	57	47	82.5
대구서부지사	42	35	83.3
경북동부지사	94	70	74.5
경북북부지사	94	72	76.6
대전지역본부	136	114	83.8
충북지사	42	33	78.6
충남지사	83	75	90.4

## 4. ' 15년 사업추진 계획

### 가. 안전성평가 대상 및 목표

▶ 평가대상 : 2,040개소(목표 : 1,000개소)

- 선정기준 : 등록기간이 1년 이상( '14.2.25 이전 등록) 업체 중 설명회 이후 부터 10월 30일까지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등록업체

구분	계	서울 본부	서울 북부	강원	강원 동부	부산 본부	울산	경남	경남 동부	광주 본부	전북	전북 서부	전남 동부	전남 서부	제주
평가목표	1,000	70	40	60	40	45	15	60	20	50	40	20	35	30	20
평가대상	2,040	146	82	120	85	92	35	115	44	94	96	38	73	58	39

  

구분	중부 본부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기 서부	경기 동부	부천	대구 본부	대구 서부	경북 동부	경북 북부	대전 본부	충북	충남
평가목표	35	50	50	30	20	10	30	20	50	30	70	40	20
평가대상	71	94	102	57	37	23	58	44	94	90	136	78	39

## 4. ' 15년 사업추진 계획

### 가. 안전성평가 대상 및 목표

▶ 평가대상의 전년도 실적현황

- 평가대상 중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734개소) 및 1건인 업체(248개소)가 전체의 48.2%(982개소)를 차지함

구분	계	200건 초과	150건 초과~ 200건이하	100건 초과~ 150건이하	50건 초과~ 100건이하
업체 수	2,040	1	4	6	27
(%)	100	0.05	0.2	0.3	1.3
구분	10건 초과~ 50건이하	5건 초과~ 10건이하	1건 초과~ 5건이하	1건	실적없음
업체 수	302	228	490	248	734
(%)	14.8	11.2	24.0	12.2	36.0

## 4. '15년 사업수진 계획

### 나. 수진일정

2월	평가계획 공고	등록업체 전체(2,260개소)
2월	안전성평가 대상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를 '15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안전성평가 대상 : 2,040개소('15년 공고일: 2.26 기준)
3월	안전성평가 사전 설명회	평가대상을 상대로 평가방법(완료보고서 평가방식)에 대해 설명회 실시 * 일선기관별로 3.16~3.31 중 평가대상 업체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 개최
3~4월	안전성평가 사전 컨설팅	설명회 불참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방법(완료보고서 평가방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요원은 반드시 사전 설명회에 참석하고 OJT(2회) 후 지원
3~10월	안전성평가 실시	설명회 및 컨설팅 이후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성평가 실시(10월말까지) * 매일 신고실적이 많은 업체 위주로 선정하여 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11~12월	평가결과 집계 및 이의신청 접수	평가결과 집계 후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실무위원회) *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전산입력
12월	'15년 안전성평가 결과 확정	평가등급 결정(운영위원회) 및 공표(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

###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2015년 2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4항, 시행규칙 제80조의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01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대상** :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14.2.25 이전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체(별첨1명단 참조) 중 안전성평가 설명회(3월 중순 공단 지사별 실시 예정) 이후 '15년 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0월 30일까지 1년 이상인 등록업체  
\* 설명회 이후 매일 일정 신고실적 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13년, '14년 안전성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은 업체도 포함됩니다.
-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으로 평가반 구성
-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 여부,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별첨2)에 따라 평가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준수 여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 3)를 확인하여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 설명회 이후부터 평가일 전까지 완료된 모든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하여 완료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평가 종료 후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평가항목 및 측정기준** : 별첨 2 참조
- 평가일정**
  - 사전 설명회 : 3월 중 공단 지사별로 실시하며 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 \* '15년 변경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평가대상 업체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실시 : 설명회 실시 후 10월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 : 2015. 11월 중순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5. 11월 중순 ~ 11월말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5. 12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안전성평가 사전 설명회에 참여하실 경우 금년도 평가시 등록인력 및 근로자의 전문화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며, 안전성평가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평가관련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문현곤 차장 052-7030-647)에게 문의바랍니다.

## 4. '15년 사업추진 계획

### 다. 양우 추진 계획

▶ 등록업체 전수에 대한 평가등급 공표

- '16년까지 등록업체 전체에 대한 평가 후 등급을 공표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평가등급의 **활용도를 제고**

▶ 등급별 평가주기 차등화

- 평가주기를 **차등관리**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등급별 평가주기 : S등급: 3년, A, B, C등급: 2년, D등급: 1년

구 분	도입 단계		전수평가 실시		평가주기 도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이후
평가 대상	실적 <b>多</b> + 대규모 공사경험		등록업체 전수 ( '13, '14년 평가업체 포함)		평가등급별 주기도래 업체
평가 방법	사무실+현장 평가 방식		사무실 + 완료보고서(현장 평가 대체) 평가 방식		
평가 목표	150개소 (실적121개소)	150개소 (실적123개소)	1,000개소	1,111개소	매년 약 600개소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b>0.1퍼센트</b> 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b>1퍼센트</b> 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 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임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임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b>&lt;삭 제&gt;</b>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대상 및 범위</li> <li>2. 조사일시 및 조사자</li> <li>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li> <li>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li> <li>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li> <li>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状) 구분 ※ 필요 시 지도 또는 도면 등 사용</li> <li>7.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 평가결과</li> <li>8.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li> </ol>	<p>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법 ----- ----- 석면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b>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b>하여야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석면 조사 결과서</p>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p> <p>&lt;단서 신설&gt;</p> <p>&lt;표 삭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밀폐면적(A)</th> <th>최소 시료채취 수</th> </tr> </thead> <tbody> <tr> <td>50m<sup>2</sup></td> <td>2</td> </tr> <tr> <td>100m<sup>2</sup></td> <td>3</td> </tr> <tr> <td>200m<sup>2</sup></td> <td>4</td> </tr> <tr> <td>500m<sup>2</sup></td> <td>6</td> </tr> <tr> <td>1000m<sup>2</sup></td> <td>9</td> </tr> <tr> <td>5000m<sup>2</sup></td> <td>16</td> </tr> </tbody> </table>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m <sup>2</sup>	2	100m <sup>2</sup>	3	200m <sup>2</sup>	4	500m <sup>2</sup>	6	1000m <sup>2</sup>	9	5000m <sup>2</sup>	16	<p>제10조(시료채취 수)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p> <p>다만, <b>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인 작업으로</b> 구멍을 뚫거나 끊어내는 작업, 깨거나 뜯질하는 등으로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파쇄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b>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b>하여야 한다.</p>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m <sup>2</sup>	2														
100m <sup>2</sup>	3														
200m <sup>2</sup>	4														
500m <sup>2</sup>	6														
1000m <sup>2</sup>	9														
5000m <sup>2</sup>	16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생략) ②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업체별 평가주기는 직전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기로 하며, 만약 평가 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b>1. S등급: 3년</b> <b>2. A, B, C등급: 2년</b> <b>3. D등급: 1년</b>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평가실시 등) ① (생략)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는 등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평가반은 평가를 완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석면해체·거작업기준 준수여부,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평가는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반은 등록업체가 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전·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평가등급 결정)</p> <p>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등록업체별 평가등급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p> <p>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항목별 점수가 <b>60점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b> 조정할 수 있다.</p> <p>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li> <li>3.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li> <li>4.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li> <li>5.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li> </ol>

## 5. 석면관련 고시 개정(안)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생 략)</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S등급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b>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으며, D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요건과 업무실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b></p>

## Q&A 석면제도 관련 질의회신

Q. 주택과 인접한 축사의 경우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A.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은 연면적과 해체·제거하려는 면적의 합이 건축물은 50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물을 포함)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구분은 「건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축사는 주택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 건축물로 판단

Q.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중 기관석면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3개 동에 대해 개별 건축물 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A. 같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석면조사 의무주체에 해당하고, 공사 계약단위로 석면조사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공사 제4권역 공사를 단일 공사로 발주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동일하다면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를 하나의 석면조사 대상으로 판단

Q.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관련하여 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A. 우리부를 포함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 융합행정과제로 한국환경공단이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적법하게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유예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 석면조사기관 분석자의 부재 시(휴가, 퇴사 등) 분석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과 같이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A. 석면조사기관의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분석자가 출산전·후 휴가 또는 3개월 이내의 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체 인력의 채용노력 등을 통해 분석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  
-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다른 석면조사기관에 시료분석의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Q.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의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인력이 채용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타 분석기관의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한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석면조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A. 석면조사기관이 신규 분석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석면조사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분석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기관의 분석결과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분석결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될 것임

Q.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보수 등(해체·제거)의 목적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

- 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Q.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없이 설계도서, 자재성분분석표, 사진 등만 첨부하여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석면조사 면제 사업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석면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설계도서, 자재성분분석표, 사진 외 환경표지 인증서,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시험성적서, MSDS, 원소재 성적서, 제품 인증서도 해당되는지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실제 석면조사기관에서 당사 자재를 분석한 결과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석면조사 면제 사업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8월 6일 이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확인을 원하시면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됨

- 다만, 위 내용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귀 질의와 같이 석면조사 면제 사업장 인증제도는 아님

Q.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A.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 : 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 :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 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 : 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Q. 기관석면조사 시 타일시멘트(타일 압착용 시멘트와 내장전용 백색 시멘트)에 대하여서도 시료채취를 통한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타일시멘트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함유건축자재 및 제품 DB(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직업건강>석면안전관리>석면작업관리>석면함유 건축자재 및 제품DB)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자재로

- 석면의 유용성을 활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석면제제를 배합, 가공하여 타일시멘트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타일시멘트 제작에 포함된 석재의 일부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만으로 모든 타일시멘트에 대해 고형시료를 채취,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Q.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

A.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체로 등록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와 해체·제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임

Q. 건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경우 기존에 계약된 공사는 유지하면서 신규 계약에 한해 업무가 정지되는데, 석면조사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계약되어 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업무정지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감리인 업무도 업무정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업무 등의 정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현장의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및 감리 업무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경우에만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 및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현장의 감리 등 모든 석면조사기관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됨

Q. 00사업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철거공사) 발주기관(A)이 소유주(B)와 보상비용지급 완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기존 소유자(B)에 의해 수행(비용부담 및 자진철거) 토록 계약 한 경우

- 발주기관(A)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전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 신고, 작업기준 준수 등을 강제하거나 이행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석면조사(제38조의2)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38조의3)의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대상

A.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함(산업보건과-3512, 2009.09.02.).

○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는 기존의 소유주(B)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신고 및 작업기준 준수의무 주체는 석면해체·제거를 소유주(B)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주(B)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의무주체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동일하게 적용됨

Q. 토지의 굴착과정 중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 슬레이트가 발생되어 처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제거되어 매립된 폐 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함유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 보호의 지급·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소관)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

Q.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산업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해야 하는 작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Q.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해 석면함유 제품을 해체 후 재부착 시키는 경우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A.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4호에 따른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건축물 또는 설비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 바, 전기공사 등을 위한 석면함유제품의 해체작업 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고 해당 작업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등록된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Q. 작업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덧입히기 위해 피스(나사)로 고정시키는 작업의 경우 등록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 하는지

A. 천정텍스에 석고보드를 피스(나사)로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발생되어 작업장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하여야 함

Q.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측정”을 해야 하는지

A.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30조의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신고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Q. 석면해체·제거업체 인력기준 중 토목·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와 공업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의미는

A.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시설물 철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하고

-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등 공업계열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가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업계 외에 인문·농업·상업계 고등학교나 대학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과에 관계없이 인정

Q.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목의 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A.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별표 10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Q.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등록 인력기준에 당해기관의 대표자도 해당되는지,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A.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산안법상 지정 또는 등록요건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그 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배제하기는 곤란하고

-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Q.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임

